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7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용일 의원(1명)

찬 성 자: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소영철,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9명)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제·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와 더불어,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여 책임있는 청년참여와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년의 책무'를 신설함 (안 제4조의2 신설)
- 나.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함 (안 제5조 신설)
- 다.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2항 신설)
- 라. 다양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기준을 마련함 (안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신설)

마.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의 협의를 통한 공동의견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 13조제2항)

바. 조례상 용어를 정비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시정참여를 통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기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안전한 활동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노력
2.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0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청년참여기구는 성별이 다른 2명의 위원장(이하 “공동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총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총회”로,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회의”를 “총회”로 한다.

-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정넷은”을 “청년참여기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통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의2(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시정참여를 통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기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u></p> <p><u>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안전한 활동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제5조 · 제6조 (생 략)</u></p>	<p><u>제6조 · 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u></p>
<p><u>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생 략)</u></p> <p><u><신 설></u></p>	<p><u>제8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u></p> <p><u>② 시장은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u></p> <p><u>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u></p>

② ~ ⑤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생략)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및 발전을 위한 노력

2.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 용 배제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 서 활동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신 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성별이 다른 2명의 위원장(이하 “공동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

-----.

③ 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

의 동의로 의결된다.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생략)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 그 -----

-----.

⑤ (현행과 같음)

⑥ 총회-----

-----.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년참여기구는 -----

-----.

1.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 위원선출기준 및 의결 방법 등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